

진료과목 '치과' 변경 신고 절차 가이드

□ 추진 배경

-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표시 불가능한 진료과목인 '치과'로 등록된 기관이 다수임

*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이에,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과목이 '치과'로 등록된 기관의 진료과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정비 내용

자체정비 대상기관: '치과(코드: 49)' 진료과목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미 표시된 '치과' 진료과목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치과 병·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해당 진료과목으로 변경 등록 바랍니다.

※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 자체정비 기간: 2024년 7월 25일(목) ~ 10월 4일(금)

※ 진료과목 변경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접수 처리 하면 심평원에 자동 전송됩니다.

□ 신고방법 및 절차

-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 ② '개설신고·변경' 탭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Hurb portal homepage. At the top right, there is a '로그인' (Login)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1'.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개설신고·변경' (Registration/Change)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2'.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for '개설신고·변경' with a flowchart showing the process: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호 부여' → '요양기관 회원가입'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To the right, there is a list of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관' (Reporting Agencies for Nursing Home Status) with a numbered list: 1. 개설신고 (Registration), 2. 지급계좌신고 (Reporting Disbursement Account), 3. 시설·인력·장비 신고 (Reporting Facility, Staff, and Equipment), 4. 식대·차등제신고 (Reporting Food and Differential System).

③ 현황변경 신고목록 '변경신고'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현황변경 신고목록' (Current Status Change Reporting List) pag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검색요청' (Search Request) and '도움말' (Help) buttons. Below the search bar, the '현황변경 신고목록' section is visible. The '변경신고' (Change Report)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3'. Below the button,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요양기관번호' (Nursing Home Number), '요양기관명' (Nursing Home Name), '민원유형' (Type of Request), '접수일시' (Receipt Date), '처리상태' (Processing Status), '요청사유' (Request Reason), and '접수확인' (Receipt Confirmation).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with the text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data exists) displayed in the center.

- ④ 기본>진료과목>시설>최종제출 탭에서 '기본'탭 임시저장 후 '진료과목' 탭으로 이동
 - ⑤ 진료과목 중 '치과(49코드)' 폐쇄신청 및 해당 진료과목 신설신청 후 임시저장
- ※ 적용일자는 '신고일자'로 날짜 선택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개설신고 변경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기본 **진료과목** 시설 최종제출

4 **5** 임시저장

변경 전 총 진료과목 수 24 변경 후 총 진료과목 수

코드	진료과목	변경전 운영현황	변경전 적용일자	변경 신청사항	변경신청	적용일자
49	치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25	폐쇄신청	신청취소	2024-07-12
50	구강악안면외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1	치과보철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2	치과교정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3	소아치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4	치주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신청취소	2024-07-12
55	치과보존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6	구강내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7	영상치의학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8	구강병리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59	예방치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61	통합치의학과	<input type="checkbox"/>		신설신청	신청취소	2024-07-12

예시

- ⑥ 기본>진료과목>시설>최종제출 탭에서 '시설'탭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코로나관련 병상-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미달 통계 마이페이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개설신고 변경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

기본 진료과목 시설 **최종제출**

전달사항 등록

구비서류 렉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올립니다.

파일명 파일용량

파일첨부

①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전달사항

신고종류서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식 민원경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최종제출"은 "사건검토 요청"을 의미합니다.
- ① "사건검토 요청"으로 신청된 민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정식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정식 접수 버튼을 클릭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① 다만, 위의 동의여부를 체크하시면 신청된 민원의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 이 경우 사전검토 완료일이 신고일이 됩니다)
- ① 처리과정 : (민원인) 사건검토 요청
 - ▣ (지자체) 사건검토(보완요청 및 미보완시 반려)
 - ▣ (민원인) 정식 신고(신청)
 - ▣ 민허가 처리
- ① 동의여부 미체크시 최종제출은 가능하나, 사건검토 완료 후 민원인이 직접 정식 신고(신청)를 해야합니다.

① 주 개설자 변경 또는 계인(->)법인 등 변경으로 기존 요양기호가 취소되고, 신규 요양기호가 부여되는 경우 통합신고포털/개설/지급계좌신고에서 새로운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진료비계좌사본을 신고하여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작성자 정보등록 **6**

+신고자 +전화번호 선택 - - 처리결과 SMS 수신여부

e-mail @ 선택

최종제출 미제출 보기

※ 진료과목 ‘치과’ 변경 신고 절차 관련 문의

구분	지자체	심평원 고객센터	심평원 업무 담당자
내용	관할 보건소	1644-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033-739-4810, 4811, 4809 · 지역본부: 관할 고객지원부